

- 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(안) -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정 이유

-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 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의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·지원과 기관·단체·대학 및 중소기업자 간의 상호협력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도모 및 경제활성화의 목적(제1조)
- 중소기업육성 및 기반산업진흥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 및 보조(제3조)
 - 기술개발, 창업보육센터, 정보화 촉진 및 중소기업자 단체육성 등
- 사업추진(제4조~제14조)
 -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 창업 지원
 -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및 중소기업협의회 구성·사업 등

4. 참고사항

-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3조
-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
-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 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시책 등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및 중소기업체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, 중소기업 창업 지원,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, 중소기업협의회 구성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 조례안은 **중소기업기본법 제3조** 『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』와 **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(구조개선 지원 계획 등)**에 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발전 시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상위법규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